



제418회국회(정기회)
제8차 환경노동위원회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납시금지·제한구역의 지정 해제 및 변경 근거 마련〉
■ 김승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237호)

2024. 11.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낚시금지·제한구역의 지정 해제 및 변경 근거 마련	2
※ 참고자료	6

I. 제안경위

2024년 8월 27일 김승수의원이 대표발의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별자치시장 등으로 하여금 하천·호소(湖沼)의 이용목적 및 수질상황 등을 고려하여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낚시제한구역에서 낚시행위를 할 경우 그 방법·시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낚시금지·제한구역의 지정에 관한 근거만 있을 뿐 그 변경·해제의 근거와 구체적인 기준·절차가 없어 국민들의 수변 접근권과 수변 이용권 등이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낚시금지·제한구역의 변경·해제 근거를 신설하고 5년마다 해당 구역의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게 하고자 함(안 제2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낚시금지·제한구역의 지정 해제 및 변경 근거 마련

개정안은 낚시금지·제한구역의 변경·해제 근거를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5년마다 구역의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0조(낚시행위의 제한) ① (생략)	제20조(낚시행위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신설>	② <u>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으로 지정한 후 5년마다 지정 사유 또는 지정 목적을 고려하여 해당 구역의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검토 결과 해당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지정 구역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정을 해제하거나 지정 구역을 변경하여야 한다.</u>
<신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

<신 설> ② · ③ (생 략) 제82조(과태료) ① · ② (생 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 략) 2. 제20조제2항에 따른 제한사항을 위반하여 낚시제한구역에서 낚시행위를 한 사람 3. ~ 6. (생 략) ④ (생 략)	<u>한구역의 지정 사유가 없어졌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지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구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지정 구역을 변경할 수 있다.</u>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의 지정 재검토 방법, 지정 · 해제 ·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 ⑥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제82조(과태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1. (현행과 같음) 2. 제20조제5항----- ----- ----- 3. ~ 6.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	--

나. 검토의견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천·호소의 이용목적 및 수질 상황 등을 고려하여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제20조제1항1)), 지정된 구역에서 낚시를 하거나 제한사항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제82조제2항2)·제3항3)).

이에 따라 2023년 12월 기준 낚시 금지구역은 대구 수성호, 경기 반월호 등 141개소, 낚시 제한구역은 충남 청천지 등 7개소가 지정되어있음(※참고자료 1·2 참조).

그러나 현행법에는 낚시금지·제한구역의 지정 근거 외 변경·해제의 근거와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는 규정되어있지 아니한 상황으로, 구역 지정의 목적이 달성되더라도 구역을 변경·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국민들의 알권리 및 국민의 수변 접근권·이용권이 제한될 우려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낚시금지·제한구역의 변경·해제 근거를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5년마다 구역의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게 하려는 것으로,

-
- 1) 「물환경보전법」 제20조(낚시행위의 제한)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하천(「하천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은 제외한다)·호소의 이용목적 및 수질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면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 2) 「물환경보전법」 제82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의2. 제20조제1항에 따른 낚시금지구역에서 낚시행위를 한 사람
 - 3) 「물환경보전법」 제82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20조제2항에 따른 제한사항을 위반하여 낚시제한구역에서 낚시행위를 한 사람

지정된 구역의 사정 변경이 발생한 경우 구역을 신속히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들의 수변 접근권과 이용권 보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참고로, 「낙시 관리 및 육성법」⁴⁾에서도 개정안과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해당 유사입법례를 참고하여 개정안의 문구를 일부 조정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 및 수정의견]

개 정 안	수 정 의 견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낙시금지구역 또는 낙시제한구역의 <u>지정 사유가 없어졌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u> 또는 지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구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지정 구역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낙시금지구역 또는 낙시제한구역의 <u>지정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지정목적이 상실된 경우</u> 또는 지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구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지정 구역을 변경할 수 있다.

문 의 처

02)6788-5546

4)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제6조(낙시통제구역)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낙시통제구역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지정 목적이 상실된 경우 또는 당초 지정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그 대상과 인접한 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낙시통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대상 구역을 변경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면관리자가 따로 있으면 그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참고자료 1: 낚시 금지·제한구역 현황

□ (지정근거) 「물환경보전법」 제20조 “낚시행위의 제한”

□ (지정목적) 무분별한 낚시행위로 인한 수질오염·어류남획 방지

□ (지정현황) 총 148개소(‘23.12 기준)

○ 낚시 금지구역 : 141개소(낚시행위 자체를 금함)

○ 낚시 제한구역 : 7개소(낚시는 가능, 수질오염유발·대량포획 등 제한)

※ 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사항 (시행규칙)

◆ (수질오염 유발행위) 떡밥·어분 등을 던지는 행위, 폐기물투기·취사행위 등

◆ (대량 포획 행위) ①어선을 이용한 낚시, ②1명당 4대 이상의 낚싯대 사용, ③1개의 낚싯대에 5개 이상의 낚싯바늘을 떡밥과 뭉쳐 던지는 행위, ④폭발물·배터리·어망 등 사용

※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장관과 협의 필요

□ (지정 절차)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 용수의 목적, 오염원 현황, 수질오염도 등 고려하여 지정

※ 지정 시 고려사항 (시행령)

◆ ①용수의 목적, ②오염원 현황, ③수질오염도, ④낚시터 인근에서의 쓰레기 발생 현황 처리여건, ⑤연도별 낚시 인구의 현황, ⑥폭서식 어류의 종류 및 양 등 수중생태계의 현황

※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장관과 협의 필요

□ (위반시 처벌)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과태료 부과·징수

※ 과태료 부과기준 (시행령)

◆ (낚시금지구역에서 낚시한 경우)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 (낚시제한구역에서 제한사항을 위반한 경우) 1차 30만원, 2차 60만원, 3차 100만원

※ 참고자료 2: 낚시 금지·제한구역 지정 현황('23.12.)

구 분	시·도	호소수	호 소 명
합 계		148	
낚시 금지구역 (141)	대구	7	수성못, 도원지, 옥연지, 금봉지, 용흥지, 군위댐, 창평호
	울산	4	선암호, 대암댐, 사연댐, 태화호
	경기	33 (농수로2)	반월호, 갈치호, 대왕호, 운중호, 서현호, 낙생호(성남), 낙생호(용인), 기흥호, 공릉호, 애룡호, 마장호, 금파호, 초리호, 봉암호, 남양호(평택), 남양호(화성), 보통리호, 삼화리농수로, 문호리농수로, 대벽저류지, 백운호수, 오전호, 왕송호수, 일왕호, 일월호, 원천호, 서호호, 신대호, 고모호, 서랑호, 기산호, 산정호, 물왕호수
	강원	8	경포호, 영랑호, 학호, 송지호, 광포호, 천진호, 봉포호, 매호
	충북	25	명암호, 연제호, 오창호, 호암호, 미암소류지, 가장골, 정안, 내성동, 서동, 탄티, 송정, 바윗골, 영수호, 영천소류지, 연탄, 송오리, 송티, 뇌실, 백암, 원남호(증평), 원남호(음성), 삼기호, 신항호, 백마호, 금정호
	충남	14	오창호, 업성호, 보령호, 마산호, 잠흥호, 탑정호, 왕암호, 입암호, 동부호, 종천수원지, 천장호, 칠갑호, 옥계호, 상가호
	전북	24 (소하천1)	기지제, 인교제, 백석제, 오송제, 지시제, 맛내제, 서은제, 군산호수, 은파호수, 당하호, 왕궁호, 금마호, 도순호, 옥정호(정읍), 옥정호(임실), 선암호, 상관호, 용담댐, 동산호, 운곡호, 동림호, 원당호, 상암호, 신운천
	전남	3 (소하천1)	동천, 수어호, 해평호
	경북	17	보문호, 부항호, 순흥호, 금계호, 성곡호, 영주호, 보현호, 풍락지, 우로지, 적제지, 대풍지, 신지, 반곡지, 성덕댐, 호춘늪, 동명지, 연호지
	경남	6	주남·동판호, 산남호, 구천호, 소동호, 노단이호, 대가호
낚시 제한구역 (7)	경기	2	발랑지, 마지지
	충남	5	청천지, 탑정호, 서부지, 종천지, 예당지